

에이치엘 클레무브 협력사 행동강령  
(Supplier code of conduct)

## 개정 이력

Rev.	Date	개정자	세부내용
1	2022.07.22	백승미	최초 작성

## ◆ 협력사 행동강령 검토 확인서 ◆

### Supplier code of conduct Review Confirmation

우리는 에이치엘 클레무브 협력사 행동강령(이하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1. 우리는 강령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에이치엘 클레무브와 거래를 수행하는 공급업체로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에이치엘 클레무브와 거래를 수행하는 공급업체로서 본 강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해당 문제가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에이치엘 클레무브가 서면으로 통지하여 시정조치 요구, 업무관계 정지 또는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에이치엘 클레무브 또는 에이치엘 클레무브가 지정한 자가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또는 당사 방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에이치엘 클레무브의 모든 요청에 대해 당사의 운영활동,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 및 대응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에이치엘 클레무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이치엘 클레무브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관련 시설, 기록 및 인력에 대한 액세스를 에이치엘 클레무브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당사의 하청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강령에 대한 모든 부적합을 시정하기 위해 합당한 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부적합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하청업체 또는 공급업체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이 강령의 요구 사항을 직원과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그들이 이 강령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이 강령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이치엘 클레무브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공급 계약과 본 강령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불일치의 범위 내에서 이 강령이 우선합니다.
5. 회사는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문서 및 기록과 해당 위험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각 위험을 최초로 식별하여 보고한 날부터 에이치엘 클레무브가 요청한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회사는 본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에이치엘 클레무브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Company Name(사명) \_\_\_\_\_

Name(성명) \_\_\_\_\_ Position(직위) \_\_\_\_\_

E-mail(이메일) \_\_\_\_\_ Tel.(전화) \_\_\_\_\_

Signature(서명) \_\_\_\_\_

Date Reviewed(일자) \_\_\_\_\_

Company Address (회사주소) \_\_\_\_\_

## 서문

HL Klemove(이하 에이치엘클레무브)는 가장 편안한 이동이 가장 안전한 순간을 만든다는 미션 아래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통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과 인류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엘클레무브는 이러한 미션을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나가고자 본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윤리, 환경, 인권, 안전, 공급망, 기술분야에서 지침을 준수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치엘클레무브는 양사 모두 변화하는 산업환경 및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본 협력사 행동강령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UN Global Compact의 10대원칙, OECD Guideline과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에이치엘클레무브는 고객, 임직원, 주주와 투자자,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 목적

에이치엘클레무브와 거래하는 전 협력사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관리를 위해 본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전 협력사의 기업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분야에서 지켜야 할 최선의 운영 관행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이 본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책임감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강령을 참조하였습니다.

만약 본 행동강령에서 권장하고있는 행위가 해당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 적용대상

본 행동강령은 에이치엘클레무브와 모든종류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 대상 입니다.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행동강령을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거래하는 하위 협력사 포함 공급망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에이치엘클레무브와 거래하는 전 협력사는 사업운영 및 경영의사결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가능한 반영해야 합니다. 에이치엘클레무브는 협력사가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에이치엘클레무브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강령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에이치엘클레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주체

당사 구매센터 ESG TFT에서 제/개정 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 개정 시 에이치엘클레무브 홈페이지 게시 및 협력사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HL Klemove Supplier Code of Conduct

에이치엘클레무브 또는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지정한 제3자는 법적허용 범위내 에서 협력사의 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 및 실사 수행 결과에 따라 에이치엘클레무브는 협력사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선활동의 계획은 수립되고 당사에 공유되며 계획을 준수하여 개선활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협력사는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기에 조치를 취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 1. 근로조건 및 인권

#### 인도적 대우

모든 구성원·관계자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이행원칙 세계인권선언(UDHR)과 UN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GPs)및 국제노동기구헌장(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에 부합하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와 고객요구사항 준수를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차별금지

임직원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나이, 혼인 상태, 장애 등을 어떠한 이유로도 임직원을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진급, 징계 등)에서 어떠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괴롭힘 금지

임직원간 발생할 수 있는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성희롱, 성적학대, 폭력, 폭언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 및 신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임직원은 존중과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임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근거하여 강제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노예제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아동노동

고용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적 최소 고용연령을 준수해야하며, 적법한 확인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또한 아동의 인격 발달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모든 단계에 아동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에 대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내역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자율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임직원에게 1주평균 1회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하여 연장근로를 지양하며, 피치 못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 산업 안전 및 보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안전보건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하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부터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위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예방 교육, 안전 보건경영시스템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계, 설비, 기구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근무지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장비를 제공해야하며 임직원은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물질·소음·분진 등의 위험을 사전 예방·관리하며, 작업환경 정기 평가를 통해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설계·적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작업장 설계 및 위험예방조치·안전수칙에 따른 작업수행·보호장비 제공·지속적 안전교육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위생관리

임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기숙사는 안전하고 청결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구와 냉·난방, 환기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재해·질병 예방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보고·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체계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결사의 자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결사의 자유와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시, 교섭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하며, 임직원의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 각각의 개별 임직원이 자유롭게 교섭사항을 건의하도록 해야합니다.

## 정치중립

정당과 공직후보자들에게 대해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하며 임직원들의 정치활동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II. 윤리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공정경쟁 및 담합금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 고객등을 공정하고 진정성있게 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시장경쟁질서를 준수하며 가격, 생산량조정, 업무정보교환 등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조품 사용 금지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 부품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및 부품의 생산,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부패, 부당 취득 및 뇌물

부패 ,뇌물 등 불법적인 행동 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임직원은 사업과 관련된 기회창출을 목적으로 한 뇌물,금품 ,호화로운 선물등을 제공,요구,수락하면 안됩니다.

## 조세

사회적책임으로서 납세의무를 인식하고, 해당국가의 조세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국가의 법률에따라 세무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무당국에서 조사요청 및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수출 제한 준수

국경을 넘어 제품, 기술 등 이동을 규제하는 수출제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무역을 제한하는 국가 및 개인과 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또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수출입관련 필요문서를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재정적책임 및 자금세탁방지

회계담당 임직원은 국제회계기준(IFRS)등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기록을 작성하며 투명하게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행위는 탈세와 같은 범죄행위의 결과로, 국가별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국제적인 의무를 적용 받습니다. 협력사는 자금세탁을 촉진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법적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검토 및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 문서화 및 기록

각종 규제준수와 회사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은폐,허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유지해야합니다

## 정보공개

협력사는 기업활동,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등의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고객사, 투자자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해 상충 방지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활동을 해야합니다.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친인척과의거래,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각종 고충처리 및 신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보복행위, 차별행위, 불이익 등의 2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보호조치 필요성이 있을 시, 이에 따른 활동도 이행하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III. 환경

환경보호관련 법규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환경문제가 기업의 필수 경영요건임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예방조치 및 친환경기술개발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친환경기술 개발 및 확산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제품 소재개발에 노력해야합니다. 제품의설계,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기술 및 제품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자원절감 및 폐기물관리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체계구축을 위해 폐기물의 감소, 재사용, 재활용 등을 고려한 폐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품수명 주기 동안 폐기물과 잔류제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직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최소화하고 폐기물 재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

원재료 및 부품에 유해화학 물질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자재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식별하여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비규제물질로 전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시대응프로세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공, 담당자교육등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IMDS시스템을 통해 모든부품에 대한 원재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별 법규에 따라 분류된 위험물질로 식별되는 모든 공정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 수자원관리

수원사용 및 배출을 측정하고 오염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모든폐수의 수질관리 및 물사용저감 활동을 수행하며 수자원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은 법적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장내 처리시설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 대기배출

공정상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화합물의 대기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저감을 위해 법적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IV. 공급망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품질, 납품, 기술, 상생, 안전, 환경 등 협력사의 공급망 전단계에서 공급망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 협력사 관리

하위 협력사와의 계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맺으며, 부당거래는 금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해 하위협력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또한 에이치엘클레무브의 공급망관리 관련 정책 및 규정도 동시에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협력사 발생 시, 역량강화 활동도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환경적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안전, 보건, 노동, 인권 등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성장기반요소관리를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있는 원재료 조달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안 1052조 분쟁광물 규제 근거, 공급망 전체에 유통되는 원자재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로부터 조달받는 모든 부품의 물질 및 재질정보 검토를 통해 무기자금,인권침해,환경파괴 등과 관련된 분쟁광물(주석,탄탈륨,텅스텐,금,Mica,코발트등) 이용되지 않도록 책임광물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책임광물 관련 정보제공 요청 시 협력사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하위 협력사와의 계약, 거래에 있어서도 책임광물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V. 경영시스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기업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법률,규정,고객요구사항과 에이치엘클레무브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준수의지 표명

협력회사 경영진은 본 행동강령의 준수 책임자로서 준수 의지를 전사에 전파해야 합니다.

###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본 강령을 포함하여 사회적, 환경적 책임 및 사업윤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활동과정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규칙 고객 요구사항 및 사내의 모든규정,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

임직원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법률 및 규정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정책·기대사항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임직원과 공급업체 및 고객에 공유해야 합니다.

## 사회공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인권노동·안전보건·환경·윤리·기타 전 영역의 준법 리스크를 확인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